

잊혀질 권리와 부적절한 정보 및 기사의 삭제 청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터넷은 정보의 생성은 물론 유통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정보는 한 번 유통되면 쉽게 지울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터넷의 개방성과 공유성으로 인해 한 번 게재한 정보는 누구나 ‘퍼가기’ 혹은 ‘복사’ 등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유통시킬 수 있어 확산성이 크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경우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한 피해를 막을 길이 막혀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정보유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 상의 잘못된 기록들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기본 취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정보보호규정안(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시작되었다. EU는 이 규정안에서 인터넷 상에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규정안은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자신이 게재한 정보는 물론 제3자가 게재한 정보까지 포함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개인정보를 링크 및 복사하여 유통한 경우까지 삭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어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를 삭제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원치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유통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잊혀질 권리의 적용과 기사 삭제 사례

잊혀질 권리를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마리오 코스하테 곤잘레스’ 판결이다. 이 판결은 ‘마리오 코스하테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빚을 갚고 이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과거 기사가 인터넷에 유통되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언론사가 보도한 해당기사는 삭제하지 않아도 되나, 구글스페인과 구글본사의 해당 기사가 검색되는 링크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보도 당시 기사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지만, 인터넷의 경우 해당 기사가 유통되어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마리오 코스하테 곤잘레스’의 판결로 인해 본격적으

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전되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구글에 자신의 정보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판결 이후 2달 동안 구글이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건수는 약 9만건이며, 약 32만개의 URL 삭제요청이 접수되었다. 구글은 이중 53%를 삭제 처리하였고, 15%는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며, 32%는 삭제요청을 거절하였다.¹⁾

이후 유럽 각국은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별 세부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잊혀질 권리 보호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정보라는 다소 포괄적인 범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한 법제화가 논의 중이며, 특히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고민하고 있다.

인터넷 기사 삭제의 찬반 논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언론보도의 내용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였다. 잘못된 보도 내용이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기사 삭제를 인정하였다.

1) 이진규(2014), 포털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 28-35쪽

2013년 3월 노컷뉴스는 보도를 통해 특정인이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당사자는 보도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웹사이트와 포털의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대법원은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하고, 해당 언론사의 기사 49건, 그리고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삭제를 명령하였다.

언론보도에 대한 기사삭제권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면서,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사삭제권을 허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나아가 언론이 국민들의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사화하는데 제한을 받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언론사나 포털 등이 자신들이 생산한 기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영업이익과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설사 잘못된 보도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실 여부를 떠나 기사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 한다고 보았다. 일부에서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유통을 제한하여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기사삭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디지털 정보의 특징과 유통구조이다. 디지털 기술로 처리된 기사는 복사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과 동일한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 무수히 복제되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중처벌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기사는 과거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효과로 인해 이미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계속

유통되어 사면과 복권 등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셋째는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다. 과거의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이 인터넷 상에 지속되어 유통될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행복해질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와 피해구제의 한계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언론중재제도의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등이 있다. 이들 법안에서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구제 방안을 적시하고 있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

민법의 경우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법원에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 기사를 삭제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언론중재제도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언론중재 과정은 말 그대로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가 성립할 경우, 기존의 기사를 존치하면서 추가적으로 정정내용, 반론내용 등을 보도하는 사후조치제도이다. 무엇보다도 피해구제의 대상을 해당 기사가 보도된 이후 6개월 이내, 그리고 보도가 있음을 안 후 3개월 이내의 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과거의 기사를 현 시점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기사는 피해를 구제하는 데 제한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언론보도 내용까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보도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 등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당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임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잘못된 언론보도의 내용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조치의 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이 약하고, 그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이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

잊혀질 권리 보호 차원의 피해구제 방안

인터넷 상의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이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면,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기존 법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새로운 법제의 제정이 바람직하다. 새로 제정되는 법에서는 잊혀질 권리 보호자의 범위를 단순히 개인에 국한하기 보다는 개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잘못된 보도 내용으로 피해를 볼 경우에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일 경우 삭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보도의 내용도 개인정보나 혹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기사 등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잘못된 보도 내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 보호 차원에서 기사 삭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중제제도를 개선하여 기사갱신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도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원래 보도기사는 존치하되,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갱신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잘못된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여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언론보도 내용의 역사적인 기록성의 특성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기사 삭제의 허용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신중해야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이 인터넷 상에 유통되어 피해를 야기시킬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 보호 차원에서 기사 삭제를 허용하는 방안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아울러 SNS의 등장으로 그 확산 속도도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잘못된 기사보도의 내용에 대한 삭제 요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 보호 차원에서 기사 삭제를 허용할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이 분명하게 잘못된 기사일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여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구제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 A A**